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2. “개폐소”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를 말한다.
3. “송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송전선로를 말한다.
4. “배전선로”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배전선로를 말한다.
5.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

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8호에 따른 저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저압에 해당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2. 다음 각 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은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소 및 저장소

라.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 목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단란주점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력단련장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

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집회장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야전력(이하 “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저압(低壓)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는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전기 저장장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5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2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2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7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8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을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을 고려할 때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인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20킬로그램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인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0킬로그램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킬로그램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 외의 관인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 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의 경우에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8조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2.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에 적합할 것

3.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을 말하며, 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공사 및 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송전·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한 경우

3. 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예비성 설비 또는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일시적으로 사용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고 긴급히 전기를 사용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 부득이 그 전기설비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하였을 때에는 그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 비상용 발전설비로서 사용 목적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 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18조에 따른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 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사유 및 재검사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안전공사는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사 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안전공사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가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온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법 제9조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

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읍·면·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설비만 해당한다.

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시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시설·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시설

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 시설

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다만, 방문요양서비스 시설 및 방문 목욕서비스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한다.

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시설

아. 「도로법」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가로등 시설. 다만, 「도로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등 시설은 제외한다.

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등시설

차.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설비

카.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 시설
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시설
파.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8호의 영업을 하는 시설

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또는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은 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과 같다. 다만,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원격관리기능을 갖춘 경우 이를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안전공사가 부적합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직접 전기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결과 절연저항, 인입구배선, 옥내배선(옥외·옥측배선을 포함한다), 누전차단기, 개폐기(차단기를 포함한다), 접지저항 중 3개 항목 이상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공사는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 따라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조치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안전공사는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재점검을 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제17조(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안전공사 및 전기 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 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점검 연월일
3. 점검의 결과
4. 통지 연월일
5. 통지사항
6. 점검자의 성명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제18조(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① 법 제12조제7항 전단에 따라 안전공사가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 내용의 변경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4조에 따른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전기안전점검 연월일
3. 전기안전점검 결과
4. 전기안전점검자의 성명
5.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21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법 제9조에 따른 사용전검사를 받은 후 2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한 후,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통시장 점포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인정서가 발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후, 안전점검을 한 날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점검의 절차, 기준, 방법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점검자의 자격기준, 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으로 본다.

제22조(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① 안전공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세대 안전점검을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소, 사용승인 일자, 단지 내 세대 현황 등 공동주택 세대에 관한 자료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의 등록현황, 전통시장 점포 현황, 구획도 등 전통시장 점포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긴급점검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안전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긴급점검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점검의 실시를 사전에 통지하면 긴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긴급점검 결과 및 안

전조치 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철거·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중지, 운용제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일반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일반용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등급 지정 대상·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로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12조·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때에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된 등급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결과에 따라 해당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11조·제12조·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의 시기 조정은 별표 6과 같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1.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
3. 휴지(休止) 중인 다음 각 목의 전기설비

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전기설비

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만 해당한다)

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 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별표 7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 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설비

가.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설비일 것
나. 설비용량(동일 산업단지 내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설비용량만을 말한다)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일 것

5.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5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사업자의 60개소 이하의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설비

6.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를 말한다)의 경우 동일 도서로 4개소 이하의 전기설비

제27조(안전관리업무를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공사,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미만으로 한다.

다. 태양광발전설비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태양광발전설비에 원격감시 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인 것.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미만으로 한다.

다. 용량 250킬로와트(태양광발전설비에 원격감시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제28조(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법 제22조제3항 단서에
서 “격지·오지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지역
3.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

4.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5. 그 밖에 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가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이 곤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9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섬이나 외딴곳에 설치된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

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사람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추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법 제2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비치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8.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2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와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
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8과 같다.

제33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법 제22조제7항에서 “산업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
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제34조(안전관리장비 보유) 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는 별표 9와 같다.

제3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제3
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전자문
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
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
자만 제출한다) 또는 그 증명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29
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
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된 계약서를 포함한다)을 첨
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
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증명
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
식의 전기안전관리자선임(해임)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른 예방 및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에 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 관련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 기술인력을 말한다): 별표10
 2.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 별표11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단체 및 전기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2. 장비명세서

제40조(변경등록 등) ① 제3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영 제2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

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42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 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2.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

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3조(보고)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3과 같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기는 별표 14와 같다.

제44조(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 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각각 별표 15 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한국전력거래소는 별표 15 제2호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16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제45조(수수료 등) 법 제42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 전기안전점검수수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수수료, 기술인력 변경등록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46조(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영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교육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교육실시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실습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별표 10 및 별표 11에 따른 교육과목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을 것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변경등록(변경사항이 기술인력인 경우만 해당한다) 업무의 수탁단체 요건

가.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나.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변경등록업무에 필요한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제47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48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범위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부득이한 공사 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준수사항 : 2015년 1월 1일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및 기간 : 2015년 1월 1일

3.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신고기한 : 2015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 민박에 시설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지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3조(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갱신·

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별표 1]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제5조 관련)

[별표 3]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제7조제4항 관련)

[별표 4]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별표 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점검 주기(제25조제6항 관
련)

[별표 7]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제26조제2항, 제
31조 관련)

[별표 8]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32조제2항 관련)

[별표 9]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제34조 관
련)

[별표 10]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제38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1] 시공관리책임자 교육 방법 (제38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2]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
지의 기준(제41조 관련)

[별표 1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14]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제43조제2항 관련)

[별표 15]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16]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4조제3항 관련)

[별표 17]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5조 관련)

[별표 18]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금액(제47조 관련)

[별지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공사계획(인가, 변경인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사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검사확인증

[별지 제6호서식] 정기검사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사용전점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용전점검확인증

[별지 제9호서식]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조치명령서

[별지 제12호서식]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

[별지 제13호서식]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별지 제15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 해임) 신고서(안전공사, 대행사
업자, 개인대행자)

[별지 제17호서식]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별지 제18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별지 제19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선임심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별지 제20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전기안전교육 수료증

[별지 제22호서식]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대행자)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3호서식]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대행자)등록증

[별지 제24호서식]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

[별지 제25호서식] 전기안전에 관한 현황보고(년도)

[별지 제26호서식] 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년도)

[별지 제27호서식] 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 점검 결과보고(년도)

[별지 제28호서식]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점점검 결과보고(년도)

[별지 제29호서식] 일반용전기설비점검(사용전점검) 결과 및 전기공급정지 현황(년도)

[별지 제30호서식]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년도)

[별지 제31호서식]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의 대상(제4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설비		
가. 설치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다만,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가) 원동력 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수력설비		
(가) 댐	댐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댐의 설치 (2) 댐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본체의 강도나 안정도 또는 홍수토의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취수설비	취수설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취수설비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통수 용량 또는 취수탑의 강도 변경을 수반한 것
(다) 침사지(沈砂池)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침사지의 설치 또는 개조
(라) 도수로(導水路) 또는 방수로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도수로 또는 방수로의 설치·연장 및 개조
(마) 헤드탱크 또는 서지탱크(surge tank)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의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여수로(餘水路)의 용량 또는 여수로의 통수 용량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여수로 또는 여수로의 종류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서지 탱크에 영향을 미치는 것 (라) 서지 탱크의 강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바) 수압관로	수압관로의 설치 및 연장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압관로 설치 및 연장 (2) 개조하는 것으로서 관 본체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사) 수차	수차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수차 설치 (2) 대체 또는 개조
(아)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	펌프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펌프 설치 (2) 대체 및 개조
(자) 저수지 또는 조정지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설치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저수지 또는 조정지 설치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상시 만수위(滿水位) 또는 최저수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판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4)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再熱器)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가열면적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연료연소설비	(1)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마)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바) 보조설비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가스터빈 설치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체
(나)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라) 보조설비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복합화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가) 가스터빈	가스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가스터빈 설치 또는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기압축기 설치 또는 대체 (2) 차실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조
(다) 연료연소설비	연료연소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연료연소설비 설치 및 대체 (2) 개조하는 것으로서 연료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라) 보일러	(1) 보일러의 설치 (2)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보일러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최고 사용압력 또는 최고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재열기의 최고 사용압력 또는

	사용온도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다) 드럼 또는 안전밸브에 관한 것
		(3) 보일러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가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5) 수리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드럼 또는 안전밸브의 대체 (나) 드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 안전밸브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마) 공해방지설비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공해방지설비를 설치·개조 또는 폐지하는 것.
(바) 증기밸브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밸브 설치 또는 대체
(사) 증기터빈	(1)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설치 (2)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증기터빈 또는 왕복기관의 개조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출력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관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4) 대체
(아) 보조설비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내연기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내연기관 설치 또는 대체
(6) 풍력설비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7) 원자력설비		풍차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원자력발전소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증기터빈설비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재열기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관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증기터빈의 설치 또는 대체 (2) 증기밸브의 설치 또는 대체 (3) 습분분리재열기의 설치 또는 대체 (4) 증기터빈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 (가) 차실·원관 또는 차축의 강도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조속장치 또는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변경을 수반하는 것
(나) 급수설비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급수펌프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복수설비	복수기(復水器)의 설치 또는 대체	복수기의 설치 또는 대체
(라) 보조설비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1) 공기압축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 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3)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모듈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2) 연료전지설비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연료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보조설비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로서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설치 또는 대체
(3) 전기저장장치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h 이상의 이차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h 미만의 이차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나)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다)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나)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의 설치 또는 대체
(다)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전압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의 설치·연장 또는 변경
라)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기수용설비(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제외한		

다) 가. 설치공사(증설공사를 포함한다) 나. 변경공사 1) 차단기 2) 변압기 3) 전선로	수전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수용설비 설치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수전전압 20만볼트 미만의 수용설비 설치 고압 이상 수전용차단기와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특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고압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전선로 설치·연장 또는 변경
--	--	---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청·신고 방법 (제5조 관련)

1. 제출서류

구 분		제출대상기관	서식	첨부서류
인가 신청 · 신고	법 제8조제1항 전단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별지 제1 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법 제8조제2항 전단	전기안전공사	별지 제2 호서식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8조제2항 전단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또는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사로서 별표1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변경공사의 경우			
	법 제8조제1항 후단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별지 제1 호서식	가. 공사계획서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라. 공사공정표 마. 기술시방서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변경 인가 신청 · 변경 신고	법 제8조제2항 후단	전기안전공사	별지 제2 호서식	

			(제출대상 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사.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사.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아.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법 제8조제2항 후단 중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 대상인 경우만 첨부한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비고

1.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는 첨부서류 중 나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계획을 분할하여 인가신청 하거나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저압에 해당하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인 경우로서 제7조제5항에 따른 사용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사계획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기저장장치는 제외한다.

2.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해당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1. 발전소	(1)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것) (3)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	(1) 송전계통도 (2)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5만분의 1) 지형도 (3)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

	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것)	한 평면도 및 단면도
가. 원동력설비	1) 수력설비	(4) 단선결선도 (1) 유량자료 (2) 사용수량의 결정에 관한 설명서 (3) 유효낙차, 이론수력 및 출력에 관한 계산서 (4) 유량의 조정방법 및 인수방법에 관한 설명서 (5) 양수발전소의 양수량 결정에 관한 설명서 (6) 수차와 발전기를 수용하는 시설로서 지하에 시설하는 것의 주변 지반의 지질 및 유수 제거방법에 관한 설명서
가) 댐	(1) 종류·높이·여유고·마루높이·마루넓이·일류정표고·일류폭 및 일류수심 (2) 댐 본체의 체적, 최대부폭, 상하류면 기울기 또는 중심각 및 반경 (3) 기초지반의 처리방법 (4) 홍수토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및 용량 (나) 수문의 종류, 주요 치수 및 문의 수 (다) 수문조작용 동력설비의 종류 및 용량(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1) 댐의 구조도 (2) 계획홍수량계산서 (3) 댐의 강도 및 안전도에 관한 계산서 (4) 홍수토의 구조도 및 용량계산서
나) 취수설비	(1)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취수지점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취수방법 (3) 취수구의 주요 치수 및 취	취수설비의 구조도

	수구 상단표고 (4) 스크린의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다) 침사지	(1) 주요 치수 (2) 토사의 침전방법 및 침전된 토사의 제거방법	침사지의 구조도
라) 도수로	(1) 길이(본수로 및 지수로와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및 압력 (2)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표준라이닝 두께 및 표준관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수로교, 역사이폰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 (3) 합류조의 주요 치수	(1) 도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3) 압력도수로의 터널 경과지의 지질 및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서
마) 방수로	(1) 방수하는 하천의 명칭 및 방수지점의 위치(동·리까지 적을 것) (2) 길이, 기울기, 표준단면형, 표준단면 치수 및 표준라이닝 두께(각각 터널, 지하 도랑, 도랑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입력 (3) 방수구의 주요 치수 및 방수구 상단표고 (4) 서지 탱크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1) 방수로의 구조도 (2) 통수용량계산서
바) 헤드탱크 또는 서지탱크	(1) 종류 및 압력 (2) 탱크의 주요 치수 (3) 스크린의 주요 치수 (4) 모든 수문의 종류 및 주요 치수 (5) 여수로의 종류 및 주요 치수	헤드탱크 또는 서지 탱크의 구조도

사) 수압관로	(1) 압력 (2) 관 본체의 길이(본관과 지관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대 관 두께, 최소 관 두께, 최대 안지름, 최소 안지름, 재료, 접합방법 및 지지방법 (3) 앵커블록의 종류 및 개수	수압관로의 구조도
아) 수차	(1) 종류·출력·회전수와 펌프 수차의 경우에는 양수량·양정 및 입력 (2) 조속기의 종류 (3)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4) 흡출관의 종류 및 흡출고 (5) 펌프수차의 경우에는 구동 장치의 종류 및 출력	펌프수차의 입력결정에 관한 설명서
자) 양수식발전설비의 양수용 펌프	(1) 종류, 양수량, 양정, 입력 및 회전수 (2) 모든 수문 또는 모든 수밸브의 종류 및 주요 치수 (3) 구동장치 종류 및 출력	
차) 저수지 또는 조정지	(1) 전용량, 유효용량, 이용수심, 상시만수위, 최저수위, 서차지(surcharge)용량, 서차지수위 및 제한수위 (2) 주변의 보강방법	(1) 저수지 또는 조정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2) 수위 담수면적곡선도 (3) 수위용량곡선도 (4) 배수위계산서
2) 기력설비		
가) 증기터빈	(1) 종류, 출력, 주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회전수 (2) 냉각수의 종류 및 가능 취수량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발전소 열정산도 증기터빈 구조도

나) 왕복기관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복수펌프 및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종류 (5)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온도, 설계외기습도, 주요 치수와 대수 (6) 증기터빈에 부속하는 열교환기의 종류, 발생증기량(가열증기량) 및 급수량,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최고 사용온도(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과 대수,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와 취부개소 (1) 종류, 출력, 기통수, 주증기정지밸브 입구의 압력 및 온도, 배기압력과 회전수 (2) 조속장치의 종류 (3)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복수펌프의 종류·용량 및 대수 (다) 튜브누설감지장치의 종류 (4) 왕복기관에 부속하는 냉각탑 또는 냉각기의 종류, 용량, 입구 및 출구의 냉각수 표준온도, 설계외기습도, 설계외기온도와 대수	왕복기관의 구조도		다) 보일러	(5) 냉각수의 종류 및 사용수량 (1)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온도, 가열면적, 유효화상면적, 급수온도와 상용 및 예비의 구분 (2) 재열기 통과 증기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가열면적 (3) 절탄기의 가열면적 (4) 안전밸브의 종류, 주요 치수 및 취부개소 (5)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토출압력, 대수(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나) 저수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6) 보일러에 부속하는 급수처리설비 및 보일러수처리설비의 종류, 용량 및 대수 (7) 보일러에 부속하는 공기에 열기의 종류, 입구 및 출구의 공기온도, 가열면적과 대수 라) 연료연소설비 (1) 미분탄 연소용 기기에 관한 급단기, 분쇄기,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용량과 대수 (2) 미분탄 외의 석탄의 연소용기에 관한 스토키(stoker)의 종류, 연소용량, 화상의 폭 및 길이와 개수 (3) 유류 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보일러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2) 급수처리 계통도 (1) 연료계통도 (2) 액화가스용 저장조 기화기냉동설비 및 가스홀더의 구조도 (3) 액화가스용 도관의 경로(지중·물밑 및 기타로 구분 표시) 경과지의 명칭 및 부근에 있는 주요 도로, 건축물, 그 밖의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축척 3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	---	------------------	--	---------------	--	---

(가) 원유용과 원유 외의 석유용 구분
(나)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4) 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버너의 종류, 용량과 대수
(5) 액화가스연소용 기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액화가스의 종류 및 발열량
(나) 버너의 종류, 용량 및 대수
(다) 액화가스용 용기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6) 그 밖의 연료의 연소용 기기에 관한 수송장치 및 연소기의 종류, 용량과 대수
(7) 연료운반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양단기 및 운단기의 종류
(나) 액화가스용 관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바깥지름의 두께
(다) 액화가스용 압송기의 종류 · 능력 · 대수와 원동기의 종류 및 출력
(8) 연료저장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저탄장의 면적 및 저탄용량
(나) 유류탱크 및 가스 · 액화가스탱크의 종류, 용량과 대수
(9) 회전수송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10) 가스발생설비에 관한 액화가스용 기화기의 종류, 최

	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3) 가스터빈 설비		
가) 가스터빈	(1) 종류, 출력,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설계외기온도와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기동용 장치의 종류, 용량 및 대수 (4) 가스터빈에 부속하는 굴뚝의 종류, 지표상의 높이 및 개수	발전소 열정산도 가스터빈의 구조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기의 구조도
다)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4) 복합화력설비		
가) 가스터빈	(3)의 (가)에 열거한 사항	가스터빈의 구조도
나) 공기압축기	종류, 입구와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회전수	공기압축도의 구조도
다) 보일러	(2)의 (다)에 열거한 사항	(2)의 (다)에 열거한 서류
라) 연료연소설비	(2)의 (라)에 열거한 사항	(2)의 (라)에 열거한 서류
마) 공해방지설비	종류, 용량과 예상발생량 및 배출량	공해방지설비의 구조도
바) 보조증기발생설비	보조증기발생설비의 용량, 최고 사용압력, 최고 사용온도 및 대수	보조증기발생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구조도
사) 증기터빈	(2)의 (가)에 열거한 사항	증기터빈 구조도
5) 내연력설비		
가) 내연기관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2)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3) 과급기의 종류, 출구의 압력, 회전수와 대수	(1) 비상정지장치에 관한 설명서 (2) 연료계통도

	(4) 내연기관에 부착된 냉각수 설비의 용량	
6) 풍력설비		
가) 풍차	(1) 종류, 출력 및 회전수 (2) 날개 지름 및 재료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1) 풍차정지 회로도 (2) 풍차 출력곡선 (3) 풍차구조도
7) 원자력설비		(1) 발전소 열정산도 (2) 예비안전성 분석 보고서(증기터빈 및 발전기 계통)
가) 증기터빈설비	(1)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주요 치수 (2) 증기터빈의 종류, 출력, 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개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재열증기 정지밸브의 종류, 대수, 입구의 압력 및 온도, 추기압력, 배기압력 및 온도, 회전수,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3) 조속장치 및 비상조속장치의 종류 (4) 습분분리재열기 및 급수가 열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최고 사용압력 및 최고 사용온도(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하여 적을 것), 가열면적, 튜브의 재료 (나) 추기차단밸브의 종류 (5) 유회유펌프, 저장조, 정화장치, 가열장치의 종류·용량·대수 및 유회유냉각기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6) 제어유펌프 및 재킹오일펌프의 종류·용량·대수 (7) 터닝기어장치의 종류, 회전수	(1) 증기터빈 구조도 (2) 증기터빈 정지 회로도 (3) 증기터빈 하반부 기초구조물의 구조도 (4) 증기터빈 기초구조물의 구조계산서 (5) 주증기 계통도 (6) 제어유 계통도 (7) 유회유 계통도 (8) 밀봉증기 계통도

	(8) 밀봉증기의 압력·온도 및 밀봉증기응축기, 배출팬의 종류·용량·대수 (9)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나) 급수설비	(1) 급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원동기의 종류·출력·대수 (나) 급수펌프의 종류, 급수량,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압력 (2) 저수설비, 탈기기의 종류·용량 (3)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개소, 개수	(1) 급수펌프의 구조도 (2) 급수계통도
다) 복수설비	(1) 복수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종류, 냉각수 표준온도, 냉각면적 및 튜브의 재료 (나) 공기추출기 또는 진공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다) 튜브누설감시장치의 종류 (2) 냉각수펌프, 복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출구압력 (3) 급수처리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복수탈염펌프, 복수탈염 저장조의 종류·용량·대수 (나)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의 종류·용량·대수	(1) 복수계통도 (2) 냉각수계통도 (3) 복수탈염계통도 (4) 원수 및 순수제조설비 배치도
라) 보조설비	(1) 기기냉각수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냉각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1) 기기냉각수 계통도 (2) 공기압축장치 계통도 (3) 보조증기발생장치 구조도 및 계통도

나. 발전기계통설비	(나) 냉각수열교환기의 종류, 대수, 입구 및 출구의 온도, 튜브의 재료	(4) 공해방지설비의 배치도 및 통도
	(2) 공기압축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압축기의 종류, 용량, 대수, 입구와 출구의 압력과 온도 (나) 공기저장조의 용량 (3) 보조증기발생설비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용량, 출구증기 압력 및 온도, 비상정지장치의 종류 (나) 급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다) 연료의 종류, 저장조의 용량 (4) 제7조제2항의 용기 및 관의 최고 사용압력 (5) 안전밸브의 종류, 분출압력 및 용량, 주요 치수, 취부 개소·개수 (6) 공해방지설비의 종류, 용량과 예상 발생량 및 배출량	
1) 발전기	(1) 종류·용량·역률·전압·상·주파수·회전수·결선법 및 냉각법과 발전전동기의 경우에는 출력(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여자장치(勵磁裝置)의 종류·용량·회전수·구동방법 및 대수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원동기와의 연결방법 (5) 발전기 냉각장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밀봉유펌프 및 고정자냉	(1) 발전기 정지회로도 (2) 발전기 밀봉유 계통도 (3) 발전기 냉각수 계통도 (4) 발전기 수소가스 계통도

2) 변압기	각수펌프의 종류·용량·대수 (나) 수소가스의 압력·온도·순도 (다) 고정자 냉각수 냉각기의 종류·대수 (라) 치환가스의 종류	
	(1) 종류·용량·전압(1차·2차 및 3차로 구분하여 적고 부하 시 전압조정장치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전압조정 범위와 탭수를 적을 것)·상·결선법 및 냉각법(상용과 예비로 구분하여 적을 것)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절연유 구외유출방지설비도면 및 계산서 (2)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3) 단선결선도
3) 차단기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 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3선단락용량계산서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		
1) 태양광설비	(1)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전류 및 모듈의 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방식 설명서 (4)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2) 연료전지설비	(1) 연료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냉각법, 대수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연료전지 설명서
3)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의 종류, 용량, 전압, 전류, 개수 및 용도 (2)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3)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4)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전기저장방식 설명서 (4) 전기저장장치의 용도에 관한 설명서 (5) 제어방식 설명서 (6) 공조시설의 배치도

4) 전기설비 계통 가) 차단기 나) 변압기 다) 전선로	공조시설의 종류, 용량 및 대수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옥측(屋側)·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 계산서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것은 제3호가목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에 따른다.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라. 비상용예비발전설비	(1) 발전설비의 종류, 출력용량, 전압, 전류, 대수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단선결선도 (2) 용량계산서 (3) 발전설비의 배치도
2. 수용설비	(1) 수용설비의 위치(동·리까지 적고 사업자 명칭도 적을 것) (2) 수용설비의 최대전력 및 수용전압 (3) 수용설비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의 명칭	(1) 주요 설비의 배치평면도 (2) 수용설비 단선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가. 차단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차단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종류·전압·전류 및 차단용량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나. 변압기	전압 1,000볼트 이상의 변압기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전압·상수·용량 및 결선법 (2)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1) 변압기용량 선정검토서 (2) 절연유구 외 유출방지설비 도면 및 계산서(10만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전선로	전압 1,000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1) 공중·옥측(屋側)·옥상·지중 및 기타의 구분 (2) 전기방식 및 중성점접지방식 (3) 공중전선로의 전선의 최저 높이 및 전선 간의 간격 (4) 지지물의 종류 및 개수 (5) 철탑지지물의 구조도 및 강도계산서 (6) 애자의 종류·크기(현수형의 경우에는 일련의 개수) (7) 지중선로의 부설방식 (8)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선로에 관한 기술 서류 (1) 전선로 지형도(전선로의 중심선·경과지와 전선로에서 좌우 100m내에 있는 약전류전선로·철도·도로·건조물·기타 설비의 위치를 명시한 25,000분의 1(시가지의 경우 2,000분의 1) 지형도) (2) 케이블의 구조도 (3) 지중전선로의 부설도 (4) 전자유도전압계산서(통신선로와 공중전선로가 5킬로미터 이내의 이격거리로 500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이거나 통신선로가 지중전선로로 5킬로미터 이상 병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전파방해의 방지조치에 관한 설명서(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것에 관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지중 또는 물밑전선로의 구조도

사용전검사를 받는 시기 (제7조제4항 관련)

1. 수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 가.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미만인 댐의 경우에는 댐의 축조가 완료된 때
- 나. 완성 후의 높이가 15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때
 - 1) 기초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댐을 축조하려고 할 때
 - 2) 축조한 댐이 완성 후의 댐 높이의 2분의 1(완성 후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댐의 경우에는 3분의 1 및 3분의 2)에 이르렀을 때
 - 3) 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공되어 저수용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 다. 압력도수로인 터널이 관통하였을 때
- 라. 수압관로를 지하에 파묻으려고 할 때
- 마.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된 때
- 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2. 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 가.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 라.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 마.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3. 가스터빈발전소에 관한 공사

-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4. 복합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 가. 가스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 나. 액화가스용 저장조 본체, 액화가스용 기화기 본체, 가스홀더 본체 또는 냉동설비 본체의 조립이 완료된 때
- 다.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에 속하는 관의 설치가 완료된 때. 다만, 지하에 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을 파묻을 때로 한다.

- 라. 가스터빈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
- 마. 증기터빈차실의 하반부 설치가 완료된 때
- 바. 보일러의 본체 조립이 완성된 때
- 사.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5. 내연력발전소에 관한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6. 풍력발전소에 관한 공사

- 가. 기초공사가 완료된 때(전기사업용 전기설비만 해당한다)
-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7. 발전소의 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에 관한 공사

- 가. 기술기준에 따른 비파괴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 나. 맞대기 용접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기계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 다.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8. 전기수용설비에 관한 공사

- 가.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지중전선로 중 토목공사가 완성된 때
- 나. 전기수용설비 중 공사계획에 따른 설비의 일부가 완성되어 그 완성된 설비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 다.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9.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공사

-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0. 연료전지발전소에 관한 공사

- 가.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준비가 완료된 때
-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1. 전기저장장치에 관한 공사

- 가.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된 때
- 나.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에 따른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

정기검사 대상 전기설비 및 시기(제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수력(양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 발전소(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를 포함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 (2) 가스터빈·보일러·열교환기(「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제외) 및 발전기 계통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 계통 (5)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나) (가) 외의 설비 (8) 구역전기사업자의 송전·변전 및 배전설비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1)부터 (4)까지의 설비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			
가. 발전설비(기력, 내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및 수력, 태양광, 연료전지 및 전기저장장치 발전소(비상예비발전설비는 제외한다))	(1)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 계통(발전기 계통을 포함한다) (2)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보일러, 열교환기(보일러 및 열교환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3) 수차발전기 계통 (4) 풍차발전기 계통 (5) 태양광·전기설비 계통 (6) 연료전지·전기설비 계통	4년 이내 2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4년 이내	(1)과 (2)에 부속되는 전기설비로서 사용압력이 0킬로그램 이상의 내압부분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7) 전기저장장치·전기설비 계통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안에 설치된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	1년 이내	
	(나) (가) 외의 설비	2년 이내	
	(1)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음식점, 지정 문화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2) 제26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2년마다 2개월 전후	
	(3) (1) 및 (2)의 설비 외의 수용가에 설치한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3년마다 2개월 전후	
	(4)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갖추 둔 자의 고압 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	4년 이내	

비 고 : 발전설비의 검사는 발전설비의 가동정지기간 중에 하며, 설비 고장 등 검사시기 조정 사유 발생 시 검사기관과 협의하여 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에 따른 검사점검 주기(제25조제6항 관련)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사·도지사가 전기설비 안전등급 결과를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음 시기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정기검사(법 제11조제1항관련)			정기점검(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 관련)		
	2년주기	3년주기	4년주기	1년주기	2년주기	3년주기
A(우수)	3년	4년	5년	2년	3년	4년
B(양호)	2년	3년	4년	1년	2년	3년
C(주의)						
D(경고)	1년	2년	3년	1년	1년	2년
E(위험)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즉시

2. 위 표에서 우수, 양호, 주의, 경고, 위험은 별표 5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등 급	상 태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危害)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 개선이 필요한 상태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 (제26조제2항, 제31조 관련)

구분	안전관리 대상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안전관리보조원인력
1. 발전설비			
가. 전기설비 (수력,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및 그 밖의 발전소 공통)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2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기계 분야 1명 (3)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및 기계 분야 각 1명
나. 기계설비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원자력 발전소만 해당함)	(1)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 (「원자력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 부분은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0킬로그램 미만의 기력설비, 가스터빈설비 및 원자력설비 (「원자력법」에	(1) 산업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생산기	

다. 토목설비 (수력발전소만 해당함)	(1) 모든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2) 높이 70미터 미만의 댐,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6킬로그램 미만의 도수로, 서지 탱크 및 방수로, 그 밖의 수력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전기설비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1) 토목구조·토목시공기술사 자격소지자 또는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토목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토목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또는 그 설비를 관할하는 사업장	(1) 모든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4)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1) 용량 50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야 3명 (2)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5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2명 (3) 용량 1,000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은 전기 분야 1명
3.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	(1)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1) 전기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전기기사 또는 전기	(1)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은 전기 분

비발전 설비		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야 2명
(2)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2)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 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	(2) 용량 5천킬로와 트 이상 1만킬로와 트 미만은 전기 분 야 1명	
(3) 전압 10만볼트 미만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2천 킬로와트 미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	(3)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 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또는 전기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 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 전압 10만볼트 미만 으로서 전기설비용량 1,500킬로와트 미만 전기 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 용	(4)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비고

-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은 전기수용설비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 중 (1)·(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안전관리보조원의 자격은 해당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이거나 같은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를 말한다.
- 같은 사업장에 발전설비와 송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전기수용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선임되는 안전관리자가 분야별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임 인원을 설비마다 산출한 선임 인원에서 많은 인원으로 한다.
-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선임해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수력발전소: 전기 및 토목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은 토목 분야 제외)
 - 나.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 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 분야 제외)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 설비: 전기 분야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제32조제2항 관련)

1. 대행범위

- 가.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안전공사의 사업소 또는 대행사업자의 사무소·영업소 및 출장소별로 계산하되, 다음 표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수에 60점을 곱한 점수 이하인 범위. 다만, 사업소 또는 영업소 소속 기술인력 1명이 담당하는 가중치 합계는 78점 이하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나. 개인대행자: 다음 표의 전기설비규모별 개소당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가중치의 합계가 60점 이하인 범위

2. 전기설비규모별 개소당 가중치

전기설비 규모		대행범위(개소)		개소당 가중치(점)		점검 횟수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저압	용량 50킬로와트 이하	85	60	0.7	1.0	매월 1회 이상
	용량 50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	75	46	0.8	1.3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66	40	0.9	1.5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60	35	1.0	1.7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40	23	1.5	2.6	매월 2회 이상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33	20	1.8	3.0	
고압 및 특고압	용량 100킬로와트 이하	60	35	1.0	1.7	매월 1회 이상
	용량 100킬로와트 초과 200킬로와트 이하	50	30	1.2	2.0	
	용량 200킬로와트 초과 300킬로와트 이하	46	27	1.3	2.2	
	용량 300킬로와트 초과 400킬로와트 이하	30	17	2.0	3.4	매월 2회 이상
	용량 400킬로와트 초과 500킬로와트 이하	25	15	2.4	4.0	
	용량 500킬로와트 초과 600킬로와트 이하	20	12	3.0	5.0	매월 3회 이상
	용량 600킬로와트 초과 700킬로와트 이하	15	10	4.0	6.0	
	용량 700킬로와트 초과 800킬로와트 이하	12	8	5.0	7.5	매월 4회

용량 800킬로와트 초과 900킬로와트 이하	10	8	6.0	7.5	이상
용량 900킬로와트 초과 1,000킬로와트 이하	8	8	7.5	7.5	
용량 1,000킬로와트 초과 1,250킬로와트 이하	6	6	10	10	
용량 1,250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	5	—	12	—	
용량 1,5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	4	—	15	—	매월 5회 이상
용량 2,000킬로와트 초과 2,500킬로와트 미만	3	—	20	—	매월 6회 이상
용량 2,500킬로와트 초과 3,500킬로와트 미만	2	—	25	—	
용량 3,500킬로와트 초과 4,500킬로와트 미만	2	—	30	—	

비고: 전기설비를 설치 또는 개조 중인 공사의 경우에는 매주 1회 이상 점검을 한다.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 (제34조 관련)

장 비	수 량
1. 절연저항 측정기(500V, 100MΩ)	1
2. 절연저항 측정기(1,000V, 2,000MΩ)	1
3. 클램프메타	1
4. 접지저항측정기	1
5. 멀티테스터기	1
6.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1
7. 특고압검전기	1
8. 저압검전기	1
9. 특고압 COS 조작봉	1
10. 고압절연장갑	1
11. 절연장화	1
12. 절연안전모	1

비고: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방법 (제38조제1항제1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가.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3년마다 1회 이상
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선임기간이 5년 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다. 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교육내용

- 가. 전기안전 관련 소양교육
-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기술규정
- 다. 전기안전관리 현장 실무·실습
- 라. 전기안전관리 운영 관련 규정
- 마. 전력계통 특성 및 사고 예방
- 바. 전기재해 예방 및 위기 대응 실무 사례
- 사. 신기술 및 에너지 관리기술

3. 행정사항

-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나. 교육기관은 제38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 다.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 라. 전기안전관리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을 같은 호 나목의 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시공관리책임자 교육 방법 (제38조제1항제2호 관련)

1. 교육의 과정·대상 및 기간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안전시공교육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나. 3년마다 1회 이상

2. 교육내용

- 가. 산업안전 관계 법령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
- 나. 전기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 다. 사업장 시공관리 및 시공안전관리 실무
- 라. 전문 공종별 시공안전
- 마. 전기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 바. 신기술 및 에너지설비 안전시공 방법

3. 행정사항

- 가. 교육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의 종류별·대상자별 및 지역별로 다음 해의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나. 교육기관은 제38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4. 그 밖의 사항

- 가.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업법」 제17조2에 따라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 나.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교육방법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 다. 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은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라.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41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두 종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두 종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제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내용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22조제2항, 제22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라.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및 업무량을 넘거나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록취소
마.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대표자를 6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없는 다른 대표자로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 제2항제5호	등록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제43조제1항 관련)

1.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처리 결과(법 제12조, 제20조 및 제52조 관련)	별지 제25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의 등록 현황(법 제26제1항 관련)		

2. 안전공사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검사업무 실시 결과(법 제9조, 제11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 관련)	별지 제26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 결과(법 제12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법 제13조 관련)	별지 제28호서식	
라.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 결과(법 제14조 관련)	별지 제27호서식	

3. 전기판매사업자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가.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결과(법 제12조 관련)	별지 제29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보고
나. 전기공급 정지 현황(법 제12조제6항 및 제20조 관련)		

시·도지사에게 보고할 사항(제43조제2항 관련)

○ 전력기술인단체의 보고사항

보고사항	서식	보고기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사항(법 제23조 관련)	별지 제30호서식	해당 연도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

중대한 사고의 종류 및 통보의 방법(제4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중대한 사고의 종류

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 1) 감전사고(사망 2명 이상 또는 부상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2) 전기설비사고
 - 가) 공급지장전력이 3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의 송전·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경우
 - 나) 공급지장전력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 고장으로 공급지장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
 -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 송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공급지장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
 - 라) 출력 3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고장으로 5일 이상의 발전지장을 초래한 경우
 - 마) 국가 주요 설비인 상수도·하수도 시설, 배수갑문, 다목적댐, 공항, 국제항만, 지하철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시간 이상 전체 정전을 초래할 경우
 - 바) 전압 10만볼트 이상인 자가용 전기설비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30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 사)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수전설비·배전설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1시간 이상 정전을 초래한 경우

나.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전력계통 운영사고[가목2)가)부터 다)까지의 사고로 인한 전력계통 운영사고는 제외한다]

2. 통보의 방법

가.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의 사항을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통보

- 1) 통보자의 소속, 직위, 성명 및 연락처
- 2) 사고 발생 일시
- 3) 사고 발생 장소
- 4) 사고 내용
- 5) 전기설비 현황(사용 전압 및 용량)
- 6) 피해 현황(인명 및 재산)

나. 사고 발생 후 15일 이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

사고조사자의 지정요건(제44조제3항 관련)

구분	지정요건																												
1.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과 나목의 자격을 갖춘 사람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부 지정 교육과정 중 “전기화재·감전·설비사고조사”에 관하여 정해진 교육(3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술사 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기계, 토목 분야의 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사람 또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8년 이상인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전기, 기계, 토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장비	가. 전기화재사고 조사용 장비 <table border="1"> <tr> <th>계측기</th><th>용도</th></tr> <tr> <td>주사전자현미경(SEM)</td><td>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고배율 조직 분석</td></tr> <tr> <td>전자현미경시스템</td><td>에너지 분산형 X-선 분석기(EDX)</td></tr> <tr> <td></td><td>파장 분산형 X-선 분석기(WDX)</td></tr> <tr> <td>금속현미경</td><td>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td></tr> <tr> <td>실체현미경</td><td>미소물질의 확대관찰 및 분석</td></tr> <tr> <td>동시열분석기</td><td>도전 및 절연재료의 열분석, 흡열·발열반응시차 조사 열량 분석</td></tr> <tr> <td>적외선분광기</td><td>고체, 액체, 기체 절연재료의 화학적 표면 내부·외부 구조 분석</td></tr> <tr> <td>연마성형기</td><td>현미경 관찰을 위한 성형작업</td></tr> <tr> <td>전류공급기</td><td>전선 및 배선기구류에 대전류를 통전시켜 발열, 발화시험</td></tr> <tr> <td>전기로</td><td>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 등의 온도상승 시험</td></tr> <tr> <td>기록계</td><td>전압, 전류, 온도 등 시험데이터 측정 및 저장</td></tr> <tr> <td>만능재료시험기</td><td>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인장강도, 압축 등 실험</td></tr> <tr> <td>향온향습기</td><td>온도·습도 조절에 의한 열화시험</td></tr> </table>	계측기	용도	주사전자현미경(SEM)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고배율 조직 분석	전자현미경시스템	에너지 분산형 X-선 분석기(EDX)		파장 분산형 X-선 분석기(WDX)	금속현미경	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실체현미경	미소물질의 확대관찰 및 분석	동시열분석기	도전 및 절연재료의 열분석, 흡열·발열반응시차 조사 열량 분석	적외선분광기	고체, 액체, 기체 절연재료의 화학적 표면 내부·외부 구조 분석	연마성형기	현미경 관찰을 위한 성형작업	전류공급기	전선 및 배선기구류에 대전류를 통전시켜 발열, 발화시험	전기로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 등의 온도상승 시험	기록계	전압, 전류, 온도 등 시험데이터 측정 및 저장	만능재료시험기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인장강도, 압축 등 실험	향온향습기	온도·습도 조절에 의한 열화시험
계측기	용도																												
주사전자현미경(SEM)	금속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고배율 조직 분석																												
전자현미경시스템	에너지 분산형 X-선 분석기(EDX)																												
	파장 분산형 X-선 분석기(WDX)																												
금속현미경	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실체현미경	미소물질의 확대관찰 및 분석																												
동시열분석기	도전 및 절연재료의 열분석, 흡열·발열반응시차 조사 열량 분석																												
적외선분광기	고체, 액체, 기체 절연재료의 화학적 표면 내부·외부 구조 분석																												
연마성형기	현미경 관찰을 위한 성형작업																												
전류공급기	전선 및 배선기구류에 대전류를 통전시켜 발열, 발화시험																												
전기로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 등의 온도상승 시험																												
기록계	전압, 전류, 온도 등 시험데이터 측정 및 저장																												
만능재료시험기	전선 및 유기질 절연재료의 인장강도, 압축 등 실험																												
향온향습기	온도·습도 조절에 의한 열화시험																												

오실로스코프	파형, 주파수, 전압, 전류 등 측정
산소농도측정기	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다기능계측기	절연·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나. 감전사고 조사용 장비

계측기	용도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기설비의 비접촉식 발열온도 측정
특고압검전기	전기의 통전 여부 확인
접지저항측정기	접지극의 접지저항 측정
산소농도측정기	지하실이나 전력구 등의 산소 농도 측정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다기능계측기	절연·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다. 전기설비사고 조사용 장비

계측기	용도
금속현미경	금속조직 관찰 촬영 및 분석
저압회로망분석기	저압회로의 고장회로 파악 및 분석
정밀전력분석계	전압, 전류, 전력 및 고조파 등 측정
적외선열화상진단장비	전력기기의 접촉상태, 전선 및 배선기구류의 열화 시험 시 온도 측정
AC절연진단장비	전력기기의 유전정접(tan δ) 측정
초음파음향진단장비	전력기기 내부 부분방전을 검출·분석하여 이상 현상 측정
절연유가스분석기	변압기 등 유입기기의 절연유의 가스성분을 분석하여 이상 열화현상 분석
활선수트리진단장비	전력용 케이블의 절연열화상태 측정
SF6가스분석기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SF6가스를 검출하여 내부 이상현상을 판별
변압기권선비측정기	변압기, 계기용 변성기 등의 권선비와 여자전류와 위상각 측정
초저항측정기	차단기접촉자 등의 초저항 측정
초음파두께측정기	초음파를 이용한 용기·관 등의 두께 측정
초음파탐상시험기	용기, 관 등의 초음파 탐상으로 용접부 결함 판정
다기능계측기	절연·접지저항 등 측정
클램프미터	전류, 전압 및 저항 측정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제45조 관련)

1.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항목	금액
가. 인건비	○ 검사·전기안전점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나. 재료비	○ 검사·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계측장비 및 차량 구입 비용과 이를 사용하는 데 수반되는 소모성 재료, 수리·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다. 감가상각비	○ 계측장비 및 차량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산출된 비용
라. 경상비	○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인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의류비, 일반 소모품비 등의 비용
마. 그 밖의 항목	○ 그 밖에 검사·전기안전점검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교육훈련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체세공과금 및 그 밖의 법정경비 등을 말하며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및 기술인력 변경등록 수수료

항목	금액
가. 인건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나. 경상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및 기술인력의 변경등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발생 비용으로 여비, 통신비, 도서인쇄비, 전산 및 일반소모품비 등의 비용

3.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비

항목	금액
가. 교육교재비	○ 교육교재 및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인쇄물 비용
나. 강의료	○ 교육과정별 강사기준에 따른 강의료
다. 교육개발비	○ 교육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교육원고 집필 및 감수비 ○ 영상교육교재 제작비
라. 홍보·인쇄비	○ 교육을 위한 안내공문 인쇄·발송 및 홍보 비용
마. 시설유지비	○ 교육시설의 유지비, 영상장비 수리 및 교환 등에 드는 비용 및 장비·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료·수도료 등의 비용
바. 인건비	○ 교육개발·설시업무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
사. 그 밖의 항목	○ 교육강사 및 집행자의 출장 여비 ○ 교육교재 및 기자재 운반비, 교육생 음료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47조 관련)

위반내용	관련 조문	처분 기준
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교육 수료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
나. 법 제27조제2항의 변경등록 중 기술인력 변경등록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다.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수탁기관 지정요건에 미달한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업무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공사계획 [] 인가
[] 변경인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공사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인가 []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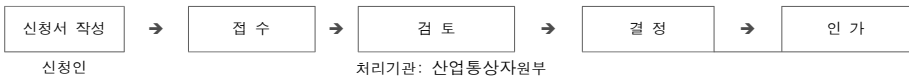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 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첨부 요령

-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사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공사명	
-----	--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사계획 []신고 []변경 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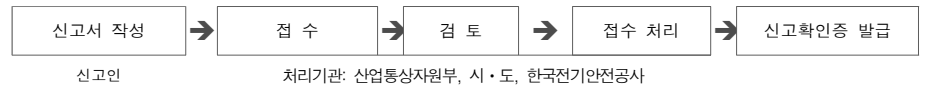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 지 사 귀하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첨부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2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3.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4. 공사공정표 1부 5. 기술시방서 1부 6.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제출대상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인 경우만 첨부한다) 1부 7.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 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8.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

처 리 절 차



첨부 요령

- 변경공사 중 자가용전기설비 폐지공사의 경우에는 첨부서류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공사계획을 나누어 인가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가신청 부분 외의 공사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사명		
신고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사용전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 기 설 비 개 요					
검사받을 공사공정					
검사희망연월일 년 월 일					
사용개시예정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검사를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 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저압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증설·변경공사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뒤 쪽)

()검사확인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검사결과	검사전기설비		
	검사연월일		
	검사자	소속	성명 ①
	판 정	(다음 검사: 년 월)	
임시사용	허용사유		
	사용기간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		

기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검사신청인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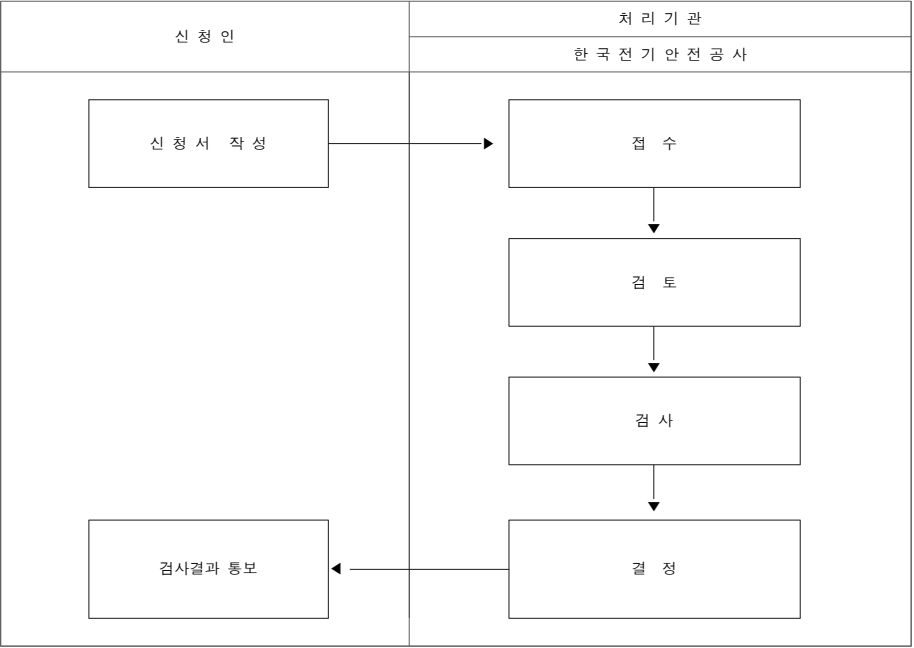
작성방법

1. 판정은 합격, 부분합격, 임시사용 등으로 적습니다.
2. 임시사용란은 판정이 임시사용인 경우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정기검사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기설비설치장소

전기설비개요

검사희망연월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위와 같이 따라 정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1부
------	-----------------------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종류 및 용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검사	→	결정	→	검사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210mm×297mm(백상지 80g/㎡)

사용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개요

점검 희망 연월일 년 월 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1부(태양광 설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를 포함합니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 () 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용 전 점 검 확 인 증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점검 결과	점검전기설비		
	점검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인)
	판정	적합	

기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용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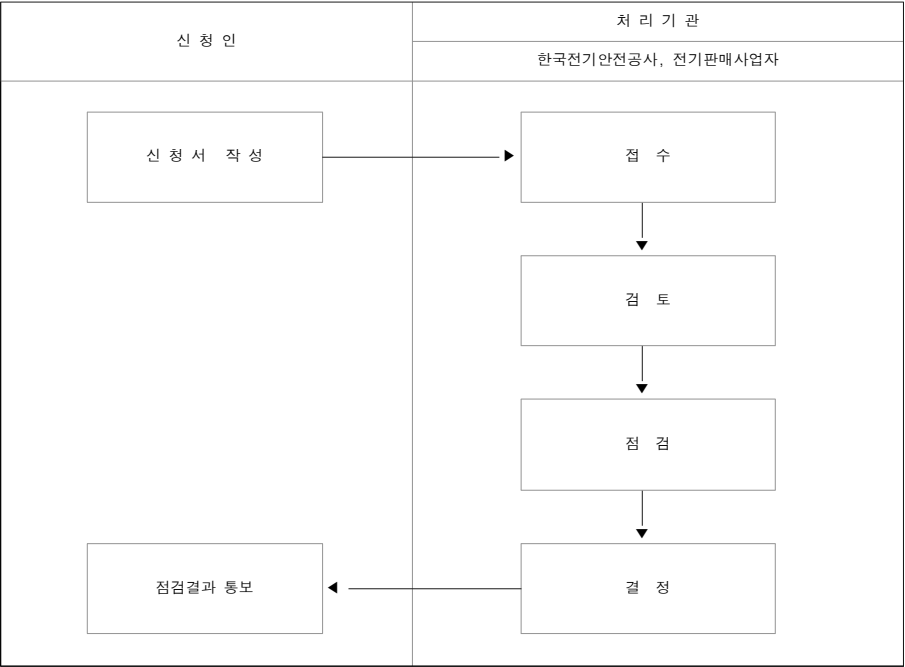
직인

점검신청인 귀하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전기안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주소	제 호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개요

점검희망연월일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점검을 신청합니다.

150 150 15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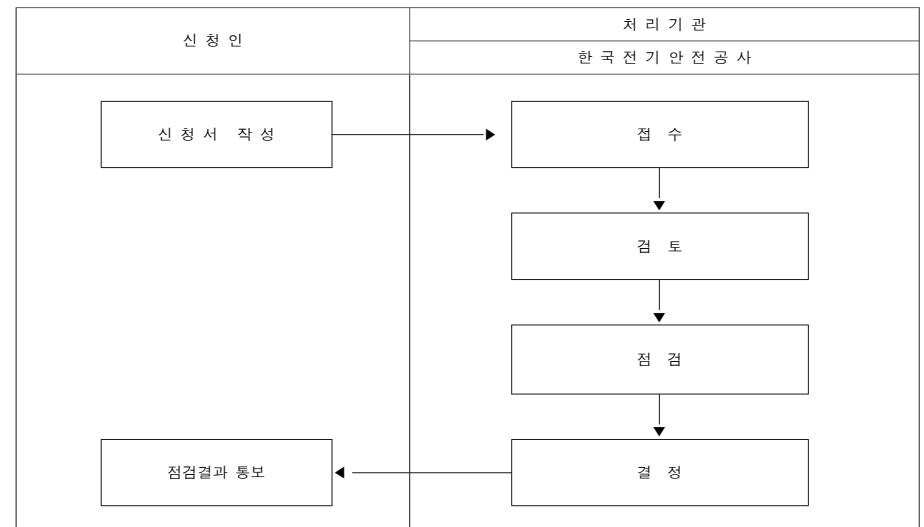
첨부서류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1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 액
------	---------------	--

작성방법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발행번호: 제 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점검결과	점검전기설비		
	점검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판정	적합	
기 타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직인

점검신청인 귀하

제 호

안전조치명령서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조치명령 대상	대상	
	위치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구분	
조치명령 구분	사유	
	내용	
	방법	
	기간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를
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

안전조치	성명(대표자)	
이행의무자	생년월일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안전조치를 이행한 시설명·지역명 또는 위치		
안전조치 이행 주요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이행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회사명 또는 상호	전화번호	
전기 설비	전기설비 종류		
	설비규모		
	안전등급		

변경신청 사유

「전기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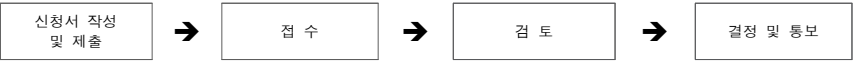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	------------------------

처리절차



신청인	한국전기안전공사
-----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지정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설비	수전설비	용량 kW	전압		V
	발전설비	상용 kW	전압		V
		비상용 kW	전압		V
구 분	성명	소속 및 직책	기술자격사항	근무연수	비 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대행자					
직무대행기간					
직무대행사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지정인 (서명 또는 인)

전기안전관리자 [] 선임 [] 해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①업체 코드						
신고인	(상주) [] 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⑥ 전화번호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⑧ 회사명 또는 상호		
		⑨ 주소		⑪ 전화번호		
전기 설비	(위탁사업자) [] 전기안전관리전문 [] 시설물관리전문	⑫ 설치장소의 주소				
		⑬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⑭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연료전지 kW	전 압 V	
				기타() kW	전 압 V	
		⑮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 관리자	⑯ 선임·해임 구분	⑰ 성 명	⑱ 주민등록번호	⑲ 기술자격사항	⑳ 선임·해임일	㉑ 구 분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해임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사)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	----

① 업체코드	
--------	--

신고인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⑤ 대표자 성명	⑥ 전화번호

전기설비	⑦ 설치장소의 주소	
	⑧ 수전설비	용 량 kW 전 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⑨ 발전설비	상 용 kW 전 압 V
		비 상 용 kW 전 압 V
		태양에너지 kW 전 압 V
		기타() kW 전 압 V
	⑩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 량 kW 전 압 V
		용 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⑪ 등록번호	⑫ 전화번호
	⑬ 회사명 또는 상호	⑭ 대표자성명
	⑮ 주소	⑯ 선·해임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서류	1. 선임신고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1부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또는 그 증명서류 1부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만 첨부합니다) 1부 2.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1.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⑥란까지 적고,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②란부터 ⑩란까지 적습니다.
2. ②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등록번호를 적고, 시설물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⑩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란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5. ⑯란은 분야별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으로 적습니다.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소재지:									
기술인력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등록번호(등록일)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수전설비		발전설비		선임·해임 (변경)연월일	가중치	가중치 누계	구분
			전압 (v)	용량 (kW)	전압 (v)	용량 (kW)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작성방법		
구분란에 선임 시에는"선임", 해임 시에는 "해임"을, 기술인력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기술인력의 성명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 작성 통보인	→ 접수 전력기술인단체	→ 자료 전산입력·관리 전력기술인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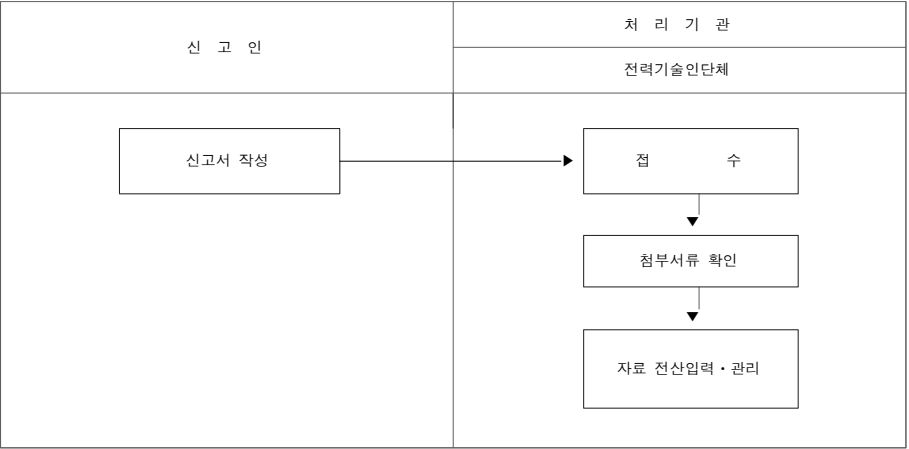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1. ㉔란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㉕란은 심야전력, 휴지설비 등을 적으며, 용도난은 계절용, 농사용, 심야용 등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 증명서
[[]상주 []위탁사업자(전기안전관리전문, 시설물관리전문)]

업체코드					
(변경) 신고인	(상주)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 전기사용자	주소 또는 소재지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위탁사업자)	업등록번호 또는 법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 전기안전관리전문	주소 또는 소재지			
	[] 시설물관리전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량	kW	전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용	kW	전압	V
		비상용	kW	전압	V
		태양에너지	kW	전압	V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kW	전압	V
		기타	kW	전압	V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량	kW	전압	V
		용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기술자격사항	선·해임일	구분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직인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선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증명서
[]변경신고
([]안전공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업체코드				
신고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용량	kW	전압	V
		계약종별	사용개시일		
	발전설비	상용	kW	전압	V
		비상용	kW	전압	V
		태양에너지	kW	전압	V
		기타()	kW	전압	V
		그 밖의 설비 (심야·휴지설비 등)	용량	kW	전압
	용도		휴지기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선·해임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해임신고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전력기술인단체장 직인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업체코드					
회사명 또는 상호					
신고인 대표자 성명					
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전기사업자		회사명 또는 상호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대표자 성명			
설치장소의 주소					
수전설비		kW, V		kW, V	
발전설비		상 용		kW, V	
		비 상 용		kW, V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kW, V	
		태양에너지 기타()		kW, V	
휴지설비		kW, V		kW, V	

「전기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전기안전교육 수료증

1. 성 명: (생년월일: . . .)
2. 소 속:
3. 교육과정:
4. 교육기간: . . . ~ . . . (시간)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연월일
	상호·대표자·소재지			
	기술인력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사업자 또는 개인대행자로 등록(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전력기술인단체장

첨부서류	1. 등록신청의 경우 가.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1부 다.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전력기술인단체장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안전관리개인대행자

등록증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사업구역	
영업소 또는 출장소	명 칭
	주소 또는 소재지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기관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활동사항	기간		
	내용		
신청비용	금액		
	산출근거		

「전기안전관리법」 제31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기 관 명)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전기안전에 관한 현황보고(년도)

1.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결과 조치사항

부적합 건수	개선명령 건수				
	이행	미이행			계
		단전 요청	과태료 부과	기 타	

2.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검사 결과 조치사항

구분	불합격 건수	개선명령 건수				계
		이행	미 이 행			
			사용정지 또는 제한조치	벌금부과 요청	기타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3.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에 따른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 등록 현황

구 분	등록 건수	변경등록 건수	비 고
대 행 사 업 자			
개 인 대 행 자			

※ 기재요령
1. 부적합 건수 및 불합격 건수는 안전공사로부터 통보받은 건수를 적습니다.
2. 기타란에는 그 건수 및 사유를 간략히 적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검사업무 실시 결과보고(년도)		

1. 자가용전기설비

구분		용 량 별(kW)									전 압 별			
		저 압		고압·특고압							계	저압	50kV 미만	50kV 이상
		75 미만	75 이상	3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5,000 미만	5,000 미만	10,000 미만	10,000 이상				
사용전검사	합격													
	불합격													
	계													
정기검사	합격													
	불합격													
	미수검													
	계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구분		발전소								변전 설비	송전 설비	배전 설비
		수력 설비	기력 설비	가스 터빈 설비	복합 화력 설비	내연 력설 비	풍력 설비	원자 력설 비	기타			
사용전검 사	합격											
	불합격											
	계											
정기 검사	합격											
	불합격											
	미수검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한국전기안전공사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일반용전기설비 및 공동주택 등 점검 결과보고(년도)		

1. 일반용전기설비

			시·도												계		
구분																	
사용전점검	적 합																
	부적합 (재점검)	적합															
		부적합															
정기 점검	적 합																
	부적합 (재점검)	적합															
		부적합															
	미점검	거부															
		부재															
		개선명령발부															
	미개수수용가																

2. 공동주택 등 안전점검

구분		시·도												계
공동 주택	적 합													
	부적합 (재점검)	적합												
		부적합												
	미점검	거부												
		부재												
	개선명령발부													
미개수수용가														
전통 시장	적 합													
	부적합 (재점검)	적합												
		부적합												
	미점검	거부												
		부재												
	개선명령발부													
미개수수용가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한국전기안전공사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보고(년도)

시 설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계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청소년수련시설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제공업시설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보육시설						
유치원						
문화재						
공연장						
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종합병원						
호텔						
카지노						
국제회의장						
기타						
소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전기판매사업자명)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 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 신: 인

제 목: 일반용전기설비점검(사용전점검) 결과 및 전기공급 정지 현황(년도)

구분 \ 시·도																			계
사용전 점검	적 합																		
	부적합 (재점검)	적합																	
			부적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전기공급 정지요청을 받은 건수																			
전기공급정지건수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전력기술인단체명

우	주소	/전화()○○○-○○○○/팩스()○○○-○○○○
담당 부서명	부장 ○○○	담당자 ○○○

문서번호:	시행일:
수 신: 사·도지사	발 신: 인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년도)		
구분			선임 대상 호수	선임 호수	미선임 호수
상주	자체 선임				
	위탁관리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대행관리		대행사업자()			
		개인대행자()			
		안전공사			
계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호수 현황

회사명 또는 상호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전 화번호	전기설비		주소 또는 소재지	미선임 기간
			수전 설비	발전 설비		

※ 기재요령: () 안에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수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중대한 전기사고의 통보(상보)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사고종류	[] 감전사고	[] 전기설비사고	[] 기타()		
발 생 일	년 월 일(요일)	시 분	날씨		
발생구분	[] 전기설비의 사용 중	[] 공사 중	[] 정지		
	[] 이동	[] 기타()			
발생장소					
회사명 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 (전압, 용량)	V, kW	전기안전관리자 직책 및 성명			
피해현황	인명피해 사망 명, 부상 명				
	재산피해 천원				
특기사항	보험가입 유무 [] 가입 [] 미가입				
	보험가입 금액 억원				
사고발생개요 및 내용					
조치사항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대한 전기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